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7조 [계단의 폭]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7조(계단의 폭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**1미터 이상**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급유용 · 보수용 ·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**1미터 미만**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9. 30.>

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조문 대조 2026. 10. 29.